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63

발 의 년 월 일 :2022년 01월 21일
발 의 자 :최기찬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기대, 김재형, 김정태, 김정환,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 이광호, 이병도, 이영실, 이정인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홍성룡, 황규복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○ 2021년 2월,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학교급식시설의 정비 및 학교급식 과정에서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

○ 이에 영양(교)사, 조리종사원 등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환기시설 등 설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신설함(안 제3조제5항 신설)

나.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급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, 「학교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조리장의 공기 질 개선)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에 적절한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~ ④ (생 략)	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11조(조리장의 공기 질 개선)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에 적절한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한다.
제11조·제12조 (생 략)	제12조·제13조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

문 서 번 호	2022010500000004

미 첨 부 사 유 서 (2 호)

요 청 인 : 최기찬 의원	담 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
접 수 일 : 2022.01.05	
회 신 일 : 2022.01.13	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3. 미첨부 사유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제5항을 신설함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 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기술되지 않았으므로 추계 곤란

- 안 제11조(조리장의 공기 질 개선)의 신설을 통해 적절한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부 지침(「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」, 2021.3.19. 제5차 개정판)에 따라 환기시설(후드, 덕트)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조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추진사업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조도형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분석관(주무관) 채소영
☏ 02-2180-7953
e-mail : liz1998@seoul.go.kr